

2026년 K-브랜드 해외 상표권 보호·라이선싱 전략 지원(시범)사업 공고(연장)

해외 진출을 추진하거나, 진출 예정인 국내 중소·중견기업의 안정적인 해외 시장 진출과 IP 기반 수익 창출을 지원하고자 「2026년 K-브랜드 해외 상표 보호·라이선싱 전략 지원 시범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8. 18.

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

※ 신청기간 연장

구 분	변경 전	변경 후
신청기간	2026.8.3.(월)~8.21.(금)	2026.8.3.(월)~8.28.(금)

1. 사업 개요

- ☐ 사 업 명: K-브랜드 해외 상표권 보호·라이선싱 전략 지원(시범)사업
- ☐ 사업목적: 해외에서 우리기업의 상표권 라이선스·프랜차이즈 계약을 희망하는 현지(인)기업과의 계약 자문을 지원하여 IP 활용 글로벌 수익 창출 지원
- ☐ 지원대상: 해외에서 프랜차이즈 계약, 상표권 사용 계약, 라이선스 계약 등을 추진(예정) 중인 수출 중소·중견기업

2. 지원 내용

- ☐ 지원규모: 기업별 최대 3천만원(총사업비) 이내
 - * 선정심사 시 지원기업별 필요 과업 범위에 따라 총 사업비 책정 예정

□ **지원비율:** 총 사업비의 최대 70% 정부지원금 지급

지원대상	정부지원 비율(총사업비 중)	기업 부담 비율	
		현금	현물*
국내 중소·중견기업	70%	0%	30%

* 현물은 기업 소속 인력 참여로 인정 가능

□ **지원내용:** 해외 로열티 수익 창출(예정) 중소·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상표권 라이선스 계약 전략 수립, 기존 계약서 검토·개선 등 맞춤형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(특허법인, 지식재산 전문 로펌 등)의 컨설팅

< 주요 과업 범위 [붙임 4] 참고 >

- **(현황 분석)** 기업 및 해외 사업 현황, 국내외 상표 사용현황 및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 분석
- **(해외 라이선스 계약 분석)** 기존·신규 라이선스 계약의 구조, 주요 계약조건, 협상 쟁점 및 법률 리스크 분석
- **(해외 계약 상대방 실사)** 계약 상대방의 기업정보, 신용, 지식재산권, 라이선스 계약 및 분쟁 이력 조사
- **(해외 라이선스 수익 구조 설계)** 라이선스 대상 상품·사용범위, 독점 여부, 대상 지역, 계약기간 및 협상전략 수립
- **(해외 라이선스 계약 검토·방법)** 로열티, 품질관리, 상표 사용, 계약 해지, 침해 대응, 분쟁해결 등 주요 계약조항 검토 및 계약 방법 제시
- **(해외 권리확보 검토 및 침해 대응요령 제시)** 라이선스 대상 국가의 상표 확보 필요성, 동일·유사 상표 조사, 등록 가능성 검토 및 침해 대응 안내
- **(해외 대리인 검토 및 계약서 작성)** 해외 대리인 검토의견 반영, 계약서 신규 작성 또는 기존 계약서 개선(안) 제시

3. 신청 기간 및 방법

□ **신청 기간:** '26. 8. 3.(월) ~ **8. 28.(금), 14:00 마감**

□ **신청 방법**

- 사업관리시스템(<https://www.ip-navi.or.kr/ipdrms>) 접속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(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, 방문·우편 접수 불가)
- 온라인 사업신청 사용자 매뉴얼 [붙임7] 참조
- 모든 붙임서류는 PDF 또는 JPG 형태로만 첨부 가능하며, 다수 파일을 등록 할 경우 1개의 PDF로 변환 및 병합하여 업로드

□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

○ 신청기업

【신청기업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】

구분	제출서류	일반 신청		간소화 신청		제출방법
		필수	해당시	필수	해당시	
신청서	지원사업 신청서 및 신청 동의서 [붙임2] 참조	○		○		온라인 입력
간소화	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동의서 [붙임2-1]			○		시스템 파일 업로드
추가 제출 서류	1. 기업규모 증명서(중소, 중견) [붙임1] 참조	○		서비스 이용		
	2. 사업자등록증(명원), 3개월 이내 발급본	○		서비스 이용		
	3. 대상제품 설명&판매자료 [붙임1] 참조	○		○		
	4. 수출 증빙자료(예정자료 포함)		○		○	
	5. 상표·디자인권 등록 또는 출원사실 증빙자료 * 간소화 신청시 출원 증빙자료 또는 해외 상표·디자인권 보유자료를 '가점 관련 증빙서류' 선택 및 별도 제출		○	서비스 이용		
	6. 지원자격 확인 체크리스트 [붙임1] 참조	○		○		
	7. 가점 관련 증빙서류 [붙임1] 참조		○		○	
	8. 제3자 부당개입 배제 약속서	○				
※ 간소화 신청 시 [붙임2-1]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 동의서 제출 필수						

○ 수행기관

【수행기관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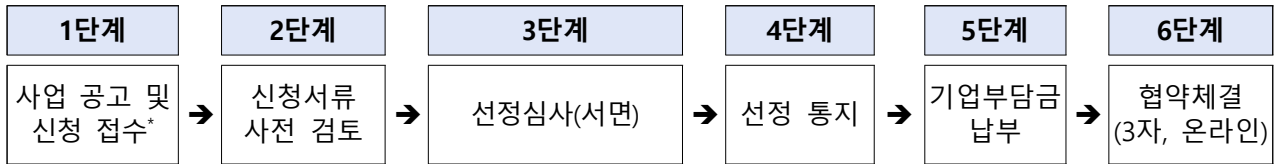
구분	필수 제출서류	제출방법
수행기관 신청서류	1. 사업수행 신청서 [붙임3] 참조	온라인 입력
	2.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[붙임3] 참조	
	3. 산출내역서 [붙임3] 참조	
	4. 사업수행 제안서	시스템 파일 업로드
	5. 사업자등록증(명원) 3개월 이내 발급본	

○ 수행기관 지정: 신청 기업이 해당 컨설팅을 수행할 전문가(특허법인 등)를 직접 지정하여 동반 신청

참고 사항	- 기업이 지정한 전문가(특허법인 등)는 '25-'26년 특허/K-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제공을 위한 전문기관 풀에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가능 - 수행기관을 지정하지 못한 기업 등의 요청 시 전년도 해당 기술분야 종합평가 우수 수행기관(S, A 등급) 목록 제공 가능(kbrand@koipa.re.kr로 요청) - IP서비스기관이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, 산업재산권 등에 대한 침해여부 판단, 권리유무효 등 법률 감정은 반드시 법적 자격이 있는 별도의 기관에서 수행 필요 - 수행인력 변경 시 사유 발생 즉시 사업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과업에 투입해야 함
----------	---

4. 세부 운영계획

□ 선정 절차



* 신청 기업이 해당 컨설팅을 수행할 전문가(특허법인 등)를 직접 지정하여 동반 신청

□ 선정 기준

- 신청기업: 선정심사 기준에 따른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기업(기관) 중 고득점 순서로 선정
- 수행기관: 수행기관 심사점수는 선정 여부와 무관하나, 추후 집중 관리 대상 과제 분류 기준으로 활용

수행기관 분류 기준	- 심사점수를 기준으로 '80점 이상 : 수행적합', '80점 미만 : 집중관리 대상'으로 구분 '집중관리 대상'으로 분류될 경우 지원기업에 '지정 수행기관 유지·변경 요청서'를 요청하고, 수행기관 변경 권고에도 유지를 희망할 경우 최종 선정 가능(해당 과제는 집중관리 예정)
---------------	---

□ 선정 결과 확인

- 선정결과는 사업관리시스템(<https://www.ip-navi.or.kr/ipdrms>) '지원기업 협약관리' 카테고리에서 확인 가능
- 최종 사업비는 최대 총 사업비 내에서 기준단가 및 예산 한도를 고려하여 조정 가능

□ 협약 체결

- 협약방식: 시스템을 통한 전자협약방식으로 진행, 기업 및 수행기관은 각 사업자 명의로 발급한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 진행

□ 품질평가 및 정산

- **과업수행:** 협약체결 후 2주 이내 착수계 제출을 시작으로 추진일정에 맞춰 컨설팅 과업 수행 및 중간·최종 보고서 제출

* 착수계 제출 시 정부지원금의 최대 50%까지 선금 신청(수행기관) 가능

- **품질평가:** 중간·최종평가를 통해 수행기관의 업무 추진현황 점검

- **정산:** 최종보고서, 정산내역서 제출 후 비용 집행 적절성 판단 등 보호원 지정 위탁 정산기관을 통해 사업비 정산

* 위탁정산비용은 총 사업비 내 과제수행 경비에 포함

< 추진 일정(지정과제) >

신청서 접수 (8.3.(월)~8.28.(금))	• 신청서 및 제출서류 접수
↓	
선정 심사	• 서면평가(내·외부위원 참여)
↓	
선정결과 통지	• 기업 선정 결과 통지(이메일 또는 온라인시스템으로 개별통지)
↓	
협약 체결	• 보호원·수행기관·기업 간 3자 협약 체결
↓	
과업수행 (협약일~2.5개월)	• 수행계획 일정 준수하여 과업 진행 • 중간·최종 보고 서면·발표평가(내·외부위원 참여)
↓	
정산 (정부지원금 지급)	• 위탁정산 완료 후 정부지원금 신청 및 지급

* 상기 일정은 보호원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

5. 유의사항

□ 신청 기업 지원 제한 사유

- ① 휴 · 폐업 기업(지원사업 공고일 기준)
- ②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·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(단, 금융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,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,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았거나 파산면책 선고자,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,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등 정부 ·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지원 가능)

- ③ 분쟁대상이 국내기업의 외국 법인, 지점, 사무소 등인 경우(단,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정하는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설립된 경우에 한함)
- ④ 지원사업으로 분쟁대상 해외기업 이외에도 국내기업이 실질적으로 주된 피해를 받을 경우
- ⑤ 신청기업의 지원사업 대상 제품·서비스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모방한 것이 명백한 경우(단, 타인과 신청기업 간 협력 관계가 현존하고 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는 지원 가능)
- ⑥ 해외기업에 대해 권리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기업이 직·간접적으로 해당 권리를 실시 또는 사용한 실적 또는 수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경우
- ⑦ 지원결과가 사회적 비난의 위험이 있거나 사업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

□ 수행기관 과제 수행 제한 사유

- ① 과제별 수행인력이 6인을 초과하거나, 연구보조원의 인건비가 총 인건비율의 20%를 초과하는 경우
- ② 과제 수행기간 중 동일 수행인력의 주관기관 지원사업 투입을 합계가 100%를 초과하는 경우
- ③ 수행기관에 재직하지 않는 외부인력이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(주관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로 참여 가능)
- ④ 정부지원금 또는 기업부담 현금의 반환명령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
- ⑤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전 지원신청을 철회하거나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의 귀책으로 협약을 해제·해지한 경우
- ⑥ 신청일 기준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입찰·사업참여 제한 대상인 경우
- ⑦ 수행기관이 변리사법, 변호사법 또는 외국법자문사법을 위반하거나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
< 기업 비밀정보 보호 >

-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수행기관은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 및 자료 등을 지원기업의 허락 없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함
-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수행기관은 본 사업과 관련한 성과 등 본 사업의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경우 지원기업의 동의를 받아야 함. 다만, 중간 및 최종보고회에서 보고하거나 지식재산처 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본 사업의 정책보고서의 작성, 국회 또는 관련 정부부처의 감사, 자료제출요구 등의 이유로 보고하는 경우 '비실명화' 후 제공할 수 있음

□ 기타 주의사항

- **(사업참여 제한) 해당 사유 발생 시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의 사업참여 제한**
 - 정부지원금 또는 기업부담 현금의 반환명령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(최대 3년)
 -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전 지원신청을 철회하거나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의 귀책으로 협약을 해제·해지하는 경우(최대 3년)
 - 당해연도 경고조치를 3회 이상 받았거나, 수행기관 종합평가 등급이 연속 2년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되고, 종합평가 결과가 80점 미만인 수행기관의 동일 수행분야 신청인 경우
 - * 매년 말 연간 수행과제를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통해 수행기관 등급 부여
 - 최근 5년 내 연속으로 사업참여제한 3년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(영구)
 - * 부당한 거래행위 확인 시 해당과제 책임연구원도 최대 3년간 사업참여를 제한함
 - 기타 협약사항 위반 시 해당 협약내용에 따라 사업참여가 제한됨
- **(위탁정산) 수행기관은 보호원이 지정한 위탁 정산기관을 통해서 사업비 정산 진행 및 비용 납부**
 - * 위탁정산비용은 과제별 150,000원(VAT 미포함)으로 경비에 포함 필수, 추후 별도 안내
- **(자료 제출 거부시 제재조치)** 보호원의 지원사업 결과물의 평가 시 주요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비 정산내역 불인정 및 향후 해당 기업 또는 수행기관에 대한 사업참여 제한 등의 제재 가능
- **(부정 목적의 활용 제한)** 과업 추진 전후 또는 진행중 동 사업을 부정한 목적으로 활용한 사실이 확인될 시 협약의 해제·해지 가능

○ (부정행위 등 제재조치)

- 정부지원금, 기업부담금 등과 관련하여 신청기업과 수행기관 간 부당한 거래가 있을 경우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부정이익을 환수 조치함
- 부정행위 또는 부정신청을 한 경우 정부지원금 등 환수 및 민형사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해당 기업 및 수행기관은 향후 보호원 사업에 참여가 제한됨
- 지원 비용 지급 후에도 사후적으로 부정행위 적발시 환수조치

※ 본 사업의 취지에 반하는 부당거래, 부정신청, 기타 부정행위시 손해배상, 부당이득반환, 기타 민법상 청구 및 형사조치, 정부기관(국회, 감사원, 지식재산처, 변리사징계위원회 등)에의 부정행위 적발사실 통보 등 가능

※ 공공재정환수법(2020.1.1. 시행)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하는 경우, 부정이익 환수, 제재 부과금 부과(최대 5배), 고액부정행위자 명단 공표 등 가능

○ (연락체계 유지 및 지원경과 공유) 본 과업종료 후 3년간 지식재산 보호원과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, 계약체결, 로열티 협상, 분쟁 종료 등 경과에 대해 공유토록 노력할 것(미협조 시 감점 부여 가능)

○ (수행인력 변경) 수행인력 변경 사유 발생 시 사업담당자에게 보고하고 2주 이내 인력 변경 신청 및 승인을 득해야 함*(단, 변경사유 발생일이 협약기간 만료 2주 이내일 경우에는 협약종료 전일까지로 함)

* 변경신청기간 도과 시 해당 인원의 인건비는 사업비 정산에서 제외함

○ (외부자문 활용)

- 법인이 분리된 계열사의 외부자문 시 물적 구분 등이 확인된 경우에 인정함
- 변리사 개인이 아닌 소속 특허법인(사무소)과 계약 체결 및 정산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함

○ (수수료 지원 제한) 관납료, 청구료, 소장접수료 등 수수료 지원 불가

○ (보고서 양식 준수) 서류 제출 시, 적합한 최신 양식 사용 필수

* 다운로드 경로를 참고하여 업데이트된 최신 양식 사용할 것

(‘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’ 누리집(www.ip-navi.or.kr/ipdrms) > ‘지원기업 서비스’ 또는 ‘전문기관 서비스’ > 자료실 > 양식 자료실)

6. 문의처

○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표디자인분쟁대응실

구분	세부 분야	담당자 연락처
사업내용	과업지시서 등 과업내용 관련	02-2183-5894, 02-6196-2016
행정	신청 및 선정절차	02-2183-5892~3, 6 02-6196-2017, 2048
	수행기관 및 연구원등록	02-2183-5892
	온라인 신청(시스템)	02-6196-2048
	정산 관련	02-2183-5892~3, 6 02-6196-2017, 2048
기타	이메일 문의	kbrand@koipa.re.kr

[붙임1] 선정심사 기준 및 제출 서류 안내

[붙임2] 지원신청서(지원기업)

[붙임2-1]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동의서 양식(기업)

[붙임3] 지원신청서(수행기관)

[붙임4] 상세 과업지시서

[붙임5] 협약서 양식

[붙임6] 온라인 사업신청 방법 안내